

# 조기 개입에 대한 가족의 권리

<p><b>평가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귀하에게는 자녀가 검사 또는 평가를 받는 것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</li> </ul>
<p><b>선택권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귀하에게는 귀하의 자녀를 평가할 사람(평가자)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.</li> <li>귀하에게는 귀하의 자녀를 위한 개별화 서비스 계획 회의에서 현재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. <b>서비스 제공자 또는 치료사는 귀하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.</b></li> <li>조기 개입(Early Intervention, EI)을 종료하더라도 자녀의 세 번째 생일까지 언제든지 재이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
<p><b>허가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귀하에게는 자녀를 티에 등록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</li> <li>귀하에게는 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 특정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만 거부하고, 동의하는 다른 서비스는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.</li> </ul>
<p><b>프라이버시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귀하에게는 귀하의 자녀 및 가족의 개인 정보를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. 저희가 티에서 근무하지 않는 사람 또는 기관에 정보를 보내기 전에는 반드시 귀하의 서면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.</li> </ul>
<p><b>회의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귀하에게는 자녀의 평가 또는 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다른 사람을 초대할 권리가 있습니다.</li> </ul>
<p><b>보험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귀하에게는 티 서비스에 대해 귀하의 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. 보험을 이용하는 경우, 귀하에게는 직접적인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</li> </ul>
<p><b>서면 통지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귀하는 자녀에 대한 평가, 자격 또는 서비스가 변경되기 전에 반드시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.</li> </ul>
<p><b>자녀의 기록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귀하에게는 자녀에 대한 모든 기록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.</li> <li>귀하에게는 이러한 기록의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</li> <li>귀하에게는 기록 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.</li> </ul>

#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취하십시오.

1 담당 서비스 코디네이터에게 말씀하십시오.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대부분의 문의 사항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.

2 지역 사무소(Regional Office)에 전화하여 차장(Assistant Director)과의 상담을 요청하십시오.

**Bronx: 718-838-6887 • Brooklyn: 718-694-6000 • Manhattan: 212-436-0900**

**Queens: 718-553-3954 • Staten Island: 718-568-2300**

3 조기 개입 소비자 사안부(Early Intervention Consumer Affairs)에 347-396-6828번으로 전화하십시오.

4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결정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, 귀하에게는 항상 결정 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. 이를 적법 절차라고 합니다. 귀하의 적법 절차 권리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.

- Ⓞ **중재:** 티 및 중재자(해당 상황과 관련이 없고 귀하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)와 귀하의 우려 사항을 논의하는 방법입니다.
- Ⓞ **공정 심리:** 행정법 판사가 우려 사항을 듣고 결정을 내리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.
- Ⓞ **시스템 불만 제기:** 뉴욕주 보건부(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)에 문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.

## 중재의 경우 다음의 주소로 서신을 보내주십시오.

**Director of Consumer Affairs**  
NYC Early Intervention Program

42-09 28th St.  
Long Island City, NY 11101

전화: 347-396-6828

팩스: 347-396-8977

## 공정 심리 또는 시스템 불만 제기의 경우 다음의 주소로 서신을 보내주십시오.

**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**  
Bureau of Early Intervention

Corning Tower, Empire State Plaza  
Albany, NY 12237

전화: 518-473-7016

팩스: 518-486-1090